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56
○ 발 의 자 : 박래학 의원(찬성의원 10명)
○ 발 의 일 : 2017년 8월 10일
○ 회 부 일 : 2017년 8월 10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 제1조, 안제2조).

나.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제20조의2 신설).

다.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3항 신설).

라.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4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8. 16. ~ 8.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체성 확립 및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제명과 본문상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조례제명 및 안제1조, 안제2조)하고,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안20조의2)하며,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관련 특별휴가를 신설(안 제24조제13항 및 제14항)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간 용어의 차별성과 편견을 지양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출산자녀지원 및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자기진작과 함께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양립이라는 균형적 제도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제명 및 본문상 공무원 명칭 변경(제명 및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u>지방공무원</u>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u>공무원</u>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지방공무원</u>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공무원</u>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1조와 제2조[1]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표현으로, 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해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미 조례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기 개정한바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춘천시(2017년 7월)의 사례가 있음.

---

1)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법령에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바, 용어 사용상의 혼돈이 없도록 개념의 정립 또는 상위법령의 용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가족돌봄 지원 근거 규정 마련과 확대(조례안 제20조의 2)

○ 안 제20조의2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의 소규모화 등에 대응하여 가족간 상호 돌봄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에 한정하던 가사휴직을 근무시간의 조정 및 기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조항이 형식적인 조문에 머물지 않고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족'의 명확화 및 후속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가족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특별휴가 신설(조례안 제24조 제13항 및 제14항)

○ 안 제24조 제13항 및 제14항은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의 출산지원 휴가(1일)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중 선택(년 1일)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⑭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년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생일 또는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 중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제17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불임치료 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휴 가 종 류				휴가일수	규정여부		비고
					복무규정	서울시 조례 (대장추가)	
특별휴가	경조사 휴 가	결혼	본인	5일	o	o	
			자녀	1일	o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o	
		출산	배우자	5일	o	o	
		입양	본인	20일	o	o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o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o	'17.5.18 조례개정 (2일 ⇒ 3일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	o	'17.12.20 조례개정 (3일 ⇒ 5일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o	o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o	
	여성보건휴가			매월 1일	–	o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1일 1시간~2시간	–	o	'17.5.18 조례개정 (육아시간 여성공무원⇒ 공무원으로 대상확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o	o	
	불임치료휴가			1일	o	o	
	수업휴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	o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	o	
	장기재직특별휴가			재직기간 10~19년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	o	
	자녀입영휴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입영당일 1일	–	o	'17.5.18 조례개정 신설
	자녀돌봄휴가			재학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이내	o	o	'17.5.18 조례개정 신설
	성과우수자휴가			5일 이내	–	o	

(작성기준일 : 2018. 2)

○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출산자녀 및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가족 친화 등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 직계존·비속 및 3촌 이내 친인척 사망 등 경조사에 부여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률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행정국)는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은 개인적인 사유가 해당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출산 및 보육 등 특별휴가 지원 현황
① 출산 : 임신 또는 출산한 여자공무원 90일(다태아 120일), 배우자 5일
② 모성보호 : 임신공무원 매일 1~2시간
③ 임신한 여성의 검진 : 매월 1일
④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매일 1시간

○ 향후에도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과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을 위한 행정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